

『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4월 20일

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법률 제7374호(2005. 1. 27)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
규정이 변경되어 2005. 7.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식품
진흥기금운용조례의 개정 필요

다. 주요내용

-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용자사업 대상자에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
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
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
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근거 마련

라. 참고사항

-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기금 용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05. 7. 28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
-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용자사업 대상자에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시켰고,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중 소비자 단체의 교육·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
-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한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